『태국, 전자상거래 및 상품 표시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026. 11. 12.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태국	전년도 수출액 (천불)	8,009,273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BT 종합지원센터 R&I Cente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태국은 디지털 광고의 투명성 확보, 상품 표시제도 정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 **(적용범위)** 태국 내 소비자 대상 광고 및 라벨 관리대상 상품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광고 수탁자의 상업적 관계 공개 의무 신설, 상품 라벨 관리체계 정비 및 소비자보호 관련 행정절차 강화

○ **(이행 정보)** 광고 수탁자의 상업적 관계 공개 및 수입상품 라벨 작성기한 준수

- 광고 수탁자의 보상 및 협찬 관계에 따른 공개 의무 적용 여부 확인
- 수입상품의 통관 및 반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라벨 작성기한 관리
- (기타) 관보 게재일부터 180일 후 시행 예정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주요국의 디지털 광고 투명성 및 소비재 표시 관련 규제 운영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및 광고 추천 지침에 따라 협찬 관계 공개 의무와 소비재 포장 표시사항 관리
- **(중국)** 광고법 및 인터넷 광고 관리방법에 따라 인터넷 광고 식별 의무와 상품 표시요건 적용
-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따라 스텔스 마케팅 규제 및 가정용품 품목별 표시요건 관리
- (EU)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 및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광고 투명성 관리, 일반제품안전규정에 따른 상품 표시정보 관리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콘텐츠 관리사항 확대, 수입상품 라벨 작성기한 변경에 따른 이행 일정의 유연성 확보 가능

○ **(권고사항)** 광고 수탁자의 협찬 관계 및 공개 의무 확인, 수입상품 라벨 작성기한과 표시요건 점검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광고 수탁자 관리)** 광고 수탁자별 보상 조건 및 협찬 관계 확인, 공개 여부 점검 필요

○ **(상품 라벨 관리)** 수입상품의 라벨 작성기한 관리 및 표시정보 점검 필요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광고 수탁자의 협찬 관계 공개 여부 확인, 수입자와 라벨 작성기한 점검
- **(중견기업)** 광고 콘텐츠 및 협찬 관계 관리체계 정비, 수입상품 라벨 작성 일정 관리
- **(대기업)** 광고 공개 의무 및 상품 표시정보 통합관리,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모니터링

목 차

요약문 1

Ⅰ. 규제 개요 2

Ⅱ. 규제 세부 내용 3

Ⅲ. 관련 인증 정보 9

Ⅳ.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3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3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5

Ⅴ.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6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6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7

Ⅵ. 대응 방안 18

참고 1 참고자료 19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20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Consumer Protection Act, B.E. 2522, 1979 - Proposed Amendment - (on inserting e-commerce definitions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importers) Draft Act, September 2026		
	국문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정의 신설 및 수입자 라벨링 요건 개정안 (2026)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태국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관보 게재일로부터 180일 후	통보일(고시일)	2026.09.11.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8,009,273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OCPB) ▪ Thai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Board		
	규제 목적	▪ 디지털 광고의 투명성 확보, 상품 표시제도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광고 수탁자의 상업적 관계 공개 의무 신설, 수입상품 라벨 작성기한 변경, 전자적 표시 범위 확대 및 소비자보호 관련 조사 권한 강화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 광고 공개 의무에 따른 콘텐츠 관리사항 확대 및 수입상품 라벨 작성 일정의 유연성 확보 가능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 협찬 관계 공개에 따른 광고 콘텐츠 관리, 수입상품 라벨 작성기한 및 표시정보 관리 부담		
	대응 방안	▪ 광고 수탁자의 협찬 관계 및 공개 의무 확인, 수입상품 라벨 작성기한 점검,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모니터링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등 변화된 거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 온라인 광고, 인플루언서의 상품 홍보, 제품 표시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기존 규정 정비 추진

□ 규제 요지

○ 「소비자보호법 (1979년)」의 광고 및 제품 표시 요건, 소비자보호 관련 행정권한과 처벌 규정 등 개정

- 광고 수탁자의 정의 및 광고 목적 공개 의무 신설, 수입자의 라벨 작성기한 규정, 조사 권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

□ 적용대상

○ 태국 내 소비자 대상 광고 및 라벨 관리대상 상품

□ 시행일

○ 관보 공포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시행 예정

2 규제 세부 내용

□ 주요 내용

○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광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광고 수탁자의 정의 및 광고 공개 의무 신설, 수입상품의 라벨 작성기한 변경, 조사 권한 및 자료관리 기준 정비
- 소비자보호 행정체계와 피해 구제절차 개정, 광고 및 라벨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기준 강화

□ 주요 개정사항

○ 광고 수탁자의 법적 지위 및 광고 공개 의무 신설, 수입자의 라벨 작성기한과 라벨위원회의 자료관리 권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 정의	- 상품 구매자, 서비스 이용자 및 사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 등 포함	- 자연인 및 비영리 법인 등 소비자 범위 확대
사업자 정의	-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서비스 제공자 및 광고사업자 등	- 광고 수탁자 등 포함
광고 매체	- 기존 법률에 따른 광고 매체 정의	- 디지털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이용자 계정 등 명시
광고 수탁자	(내용 없음)	-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실시간 방송 진행자, 제휴 마케팅 담당자 및 가상 인물 등 포함
광고 공개 의무	- 광고위원회의 광고 목적 표시 관련 명령 권한 규정	- 광고 수탁자의 광고 목적 및 사업자 관계 공개 의무 신설
라벨 정의	- 상품 및 포장에 표시되는 문자, 그림, 기호 등	- 전자적 표시, 디지털 코드 및 관련 정보매체 등 포함
라벨 작성기한	- 제조자 및 수입자 등은 판매 전 작성	- 제조자는 판매 전, 수입자 및 수입 주문자는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료관리	- 담당 장관의 고시 및 부령에 따른 장부와 증빙자료 관리	- 라벨위원회의 장부, 문서 및 증빙자료 작성과 보존 기준 고시
조사 권한	- 기존 법률에 따른 자료 요구 및 조사 권한	- 위반 의심 시 컴퓨터 자료 및 전자자료 제출 명령 권한 확대
벌칙	- 기존 형사처벌 및 벌금 기준	- 처벌 상한 인상, 광고 수탁자에 대한 처벌 적용 및 일부 행정질서벌금 전환

□ 용어 및 정의

○ (광고 매체)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수단을 포함하도록 정의 확대

- 사회관계망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및 이용자 계정 등 포함

○ (광고 수탁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활동을 수행하는 자의 정의 신설

-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실시간 방송 진행자, 제휴 마케팅 담당자 및 가상 인물 등 포함

○ (라벨) 상품 및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 외에 전자적 표시수단을 포함하도록 정의 확대

- 전자적 기호, 코드 및 디지털 표시수단 등 포함

□ 광고 관리

○ (광고 공개 의무) 광고 수탁자의 광고 목적 및 사업자와의 관계 공개 의무 신설

- 소비자가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관여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

○ 광고 공개 의무 적용 사업자와의 관계 및 광고 활동 조건 규정

구분	적용 조건
고용관계	-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광고 활동
금전적 보상	- 광고 활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 수령
기타 보상	- 광고 활동과 관련한 금전 외 보상 수령
무상 제공	-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할인 제공	-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타	- 광고위원회가 관보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상 제공 및 할인 제공은 광고 게시 조건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개정안 제19조에 따라 기존 법률 제26조의1 신설

□ 라벨 관리

○ (라벨 작성기한) 라벨 관리대상 상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라벨 작성기한 변경

적용대상	변경 전	변경 후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제조자	- 상품 판매 전	- 상품 판매 전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수입자	- 상품 판매 전	-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수입 주문자	- 상품 판매 전	-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개정안 제20조에 따라 기존 법률 제31조 제2항 개정
- 라벨 기재사항은 기존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라벨위원회의 관련 고시 기준 적용

※ 라벨 작성기한은 라벨 관리대상 상품에 적용

○ (라벨 기재사항) 기존 법률 제31조에 따른 라벨 관리대상 상품의 표시요건 적용

구분	주요 기재사항
표시내용	- 사실에 부합하고 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 정보
사업자 정보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이나 상표, 제조장소 또는 수입사업장
상품 정보	- 상품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수입상품	- 제조국명
기타 사항	- 가격, 수량, 사용방법, 권고사항, 경고사항 및 유효기간 등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정보

- 기타 기재사항은 라벨위원회가 관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적용

○ (자료 작성 및 보존) 라벨 관리대상 상품 관련 사업자의 자료관리 기준 정비

- 라벨위원회가 장부, 상업 문서 및 증빙자료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기준을 관보 고시로 규정
- 개정안 제21조에 따라 기존 법률 제35조 개정

□ 조사 권한 및 소비자보호 행정체계

○ (조사 권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전자자료 제출 명령 권한 확대

- 법률 위반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전제로 컴퓨터 자료 및 전자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기존 법률의 담당 공무원 권한 관련 규정 개정

ㅇ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회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국가 단위 위원회와 지방 및 방콕 소비자보호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정비
- 소비자 분쟁조정, 소송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권한 정비

ㅇ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 관련 소송 및 소비자보호 단체 인정절차 등 개정

-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의 인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관련 불복 절차 정비

□ 처벌 및 제재

ㅇ 허위 광고, 기만적 표시 및 위원회 명령 위반 등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 상한 인상

구분	위반행위	변경 전	변경 후
제47조	-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 및 라벨 사용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50,000바트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 200,000바트 이하
제47조	- 동일 위반행위 재범	-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00바트 이하	- 징역 2년 이하, 벌금 400,000바트 이하
제48조	- 광고 관련 법정 의무 위반	-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30,000바트 이하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100,000바트 이하
제49조	- 광고위원회 명령 위반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50,000바트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 200,000바트 이하
제52조의1	- 수입자 등의 라벨 작성기한 위반	- 해당 조항 없음	- 징역 1년 이하, 벌금 200,000바트 이하
제52조의2	- 제조자·수입자 등의 라벨 관련 위반	-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00바트 이하	- 징역 2년 이하, 벌금 400,000바트 이하
제53조	- 라벨위원회 명령 위반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50,000바트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 200,000바트 이하
제54조	- 위법한 라벨 제작 및 부착 관련 위반	- 벌금 20,000바트 이하	- 행정질서벌금 200,000바트 이하
제55조	- 라벨 관련 자료 관리 기준 위반	- 벌금 10,000바트 이하	- 행정질서벌금 100,000바트 이하

※ 제47조부터 제49조, 제52조의1 및 2, 제53조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 (처벌 적용대상) 광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대상에 광고 수탁자 포함

- 광고 매체 소유자, 광고사업자 및 광고 수탁자 등에 대한 처벌 적용 규정

○ (행정질서벌금) 일부 라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금의 행정질서벌금 전환

- 위법한 라벨 제작 및 부착, 라벨 관련 자료관리 기준 위반 등에 적용

□ 경과조치

○ 기존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하위규정 및 관련 고시의 효력 유지

- 개정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규정의 효력 유지

○ 개정안에 따라 관보 공포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시행 예정

3 관련 인증 정보

※ 본 규정의 제도적 특성상 별도의 인증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이행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함

□ 이행 절차

ㅇ 광고 수탁자 및 광고 공개 의무 적용 여부 확인

-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라이브 진행자, 제휴 마케팅 담당자 등 광고 수탁자 해당 여부 확인
- 사업자와의 고용관계, 금전적 보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상 제공 및 할인 제공 등 광고 활동 조건 확인
- 소비자가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관여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공개 의무 적용 여부 확인

ㅇ 광고 목적 및 사업자 관계 공개

- 광고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콘텐츠에 광고 목적 및 사업자와의 관계 표시
- 광고위원회가 관보 고시로 정하는 추가 조건의 적용 여부 확인

ㅇ 라벨 관리대상 상품 및 표시요건 확인

- 태국 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상품의 라벨 관리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기존 법률 및 라벨위원회 고시에 따른 상품별 표시사항 확인

ㅇ 라벨 작성 기한 준수

-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제조자는 상품 판매 전 라벨 작성
- 태국 내 수입자 및 수입 주문자는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라벨 작성 필요
- 수입상품의 통관 및 반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라벨 작성기한 관리

□ 사후관리

ㅇ 광고 관련 의무 이행

- 광고 수탁자의 사업자 관계 및 보상 조건에 따른 광고 공개 의무 준수
- 광고위원회의 관련 고시 및 개별 명령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 이행

ㅇ 라벨 관련 자료 작성 및 보존

- 라벨위원회가 정하는 장부, 상업 문서 및 증빙자료의 작성과 보존 기준 준수
- 라벨위원회의 관련 고시 및 개별 명령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 이행

ㅇ 관계기관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 컴퓨터 자료 및 전자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의 적용 범위 확인

□ 표시사항

ㅇ 광고 목적 및 사업자 관계 공개

- 광고 수탁자가 광고 공개 의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목적 및 사업자와의 관계 표시
- 금전적 보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상 제공 및 할인 제공 등 광고 활동 조건에 따른 공개 의무 적용

○ 라벨 관리대상 상품의 표시사항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이나 상표, 제조장소 또는 수입사업장, 상품 식별정보 표시
- 수입상품의 제조국명 표시
- 상품별 적용 기준에 따라 가격, 수량, 사용방법, 권고사항, 경고사항 및 유효기간 등 표시
- 라벨 기재사항은 기존 법률 및 라벨위원회가 관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 전자적 표시수단

- 전자적 기호 및 디지털 코드 등 개정안에서 확대하는 라벨 정의의 적용 여부 확인
-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라벨위원회 고시의 표시방법 및 조건 확인

□ 이행 시 유의사항

○ **(서류 보존기간)** 라벨위원회가 정하는 장부, 문서 및 증빙자료의 작성과 보존 기준 적용

○ **(변경사항 발생 시)** 광고 수탁자의 사업자 관계 및 보상 조건, 상품의 라벨 기재사항 변경 시 관련 의무 적용 여부 확인

○ **(위반 시 제재)** 광고 공개 의무 및 라벨 관련 규정 위반 시 해당 처벌 적용

- 허위 광고, 광고위원회 명령 위반 및 라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 적용
- 일부 라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금 적용

□ 유관기관

○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 (OCPB)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집행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행정업무 담당

○ 광고위원회 (Committee on Advertisement)

- 광고 관련 기준 및 고시 제정, 광고에 관한 명령 등 담당

○ 라벨위원회 (Committee on Labels)

- 라벨 관리대상 상품의 표시요건 및 자료관리 기준 설정, 라벨 관련 명령 등 담당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연방거래위원회법」[1] 및 「광고에서의 추천 및 사용 후기 활용에 관한 지침」[2]에 따라 기만적 광고 및 광고주와 추천인 간 중요 관계의 미공개 행위 규제

○ **(도입동향)** 2023년 광고 추천 지침 개정을 통해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 및 온라인 광고의 협찬 관계 공개 기준 구체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공정포장표시법」[3]에 따라 적용대상 소비재의 상품명, 사업자 정보 및 내용량 등 포장 표시사항 관리

2 중국

○ **(현행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4] 및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5]에 따라 인터넷 광고의 식별 가능성, 광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광고 표시요건 규정

○ **(도입동향)** 2023년 개정된 「인터넷 광고 관리방법」 시행을 통해 생방송 광고, 구매 연결수단을 포함한 광고 및 인터넷 플랫폼의 광고관리 의무 구체화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6] 제27조에 따라 제품명, 제조자 정보, 품질검사 합격증명 및 해당 경고사항 등 상품 표시요건 관리

---

1)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 16 CFR Part 255
3)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4)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5) 互联网广告管理办法
6)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3 일본

○ **(현행 규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7]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행위 규제

○ **(도입동향)** 2023년 10월 스텔스 마케팅 규제 시행을 통해 인플루언서 광고 및 상품 후기 등에 대한 광고 목적 공개 의무 적용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가정용품 품질표시법」[8]에 따라 대상 상품의 품질정보, 취급방법 및 표시 책임자 정보 등 표시요건 관리

4 EU

○ **(현행 규정)** 「불공정 상업관행 지침」[9]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업광고 및 광고 목적을 공개하지 않은 유료 홍보행위 규제

○ **(도입동향)** 「디지털서비스법」[10]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식별 정보, 광고 의뢰인 및 광고 수신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투명성 의무 적용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일반제품안전규정」[11]에 따라 적용대상 소비자제품의 제조자 정보, 제품 식별정보 및 안전 관련 표시사항 관리

7)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8) 家庭用品品質表示法
9) Directive 2005/29/EC
10) Regulation (EU) 2022/2065
11) Regulation (EU) 2023/988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태국** (본 규제)	미국	중국	일본	EU
주요 규제체계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연방거래위원회법」 및 광고 추천 지침	「광고법」 및 「인터넷 광고 관리방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불공정 상업관행 지침」 및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관리기관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 및 광고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FTC)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소비자청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관할당국
디지털 광고 적용범위	디지털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이용자 계정 등	온라인 추천 광고, 상품 후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등	인터넷 광고, 생방송 광고 및 구매 연결수단을 포함한 광고 등	사업자가 관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및 상품 후기 등	온라인 상업광고 및 플랫폼 광고
광고 수탁자 관리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및 제휴 마케팅 담당자 등 광고 수탁자 정의 신설	광고주, 추천인 및 광고 관련 중개자의 책임 규정	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 게시자 및 광고 추천인 등 역할별 책임 적용	광고주인 사업자에 직접 책임 부과	상업광고 관련 사업자 책임 및 플랫폼의 광고 투명성 의무 적용
상품 라벨 관련 규정	「소비자보호법」 제31조 및 라벨위원회 고시	「공정포장표시법」 및 품목별 표시 규정	「제품품질법」 및 품목별 표시 규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및 품목별 표시 규정	「일반제품안전규정」 및 품목별 표시 규정
주요 라벨 표시사항	제조자 및 수입자 정보, 상품 식별정보, 제조국명 및 상품별 추가 표시사항	상품명, 사업자 정보 및 내용량 등	제품명, 제조자 정보, 품질검사 합격증명 및 해당 경고사항 등	품목별 품질정보, 취급방법 및 표시 책임자 정보 등	제조자 정보, 제품 식별정보 및 해당 안전정보 등
수입상품 라벨 관리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라벨 작성	적용대상 상품의 관련 표시요건 준수	수입상품에 대한 관련 제품표시 요건 적용	적용대상 수입상품의 일본어 표시요건 적용	수입자의 제품 표시정보 확인 및 관련 의무 이행
전자적 표시	전자적 기호 및 디지털 코드 등 라벨 정의 확대	품목별 관련 표시 규정에 따라 적용	관련 법령 및 품목별 표시 기준에 따라 적용	품목별 표시 기준에 따라 적용	전자적 정보 제공 추가 허용 및 법정 표시의무 유지
조사 및 사후관리	전자자료 제출 명령 권한 확대 및 라벨 관련 자료관리 기준 정비	연방거래위원회의 기만적 광고 조사 및 집행	인터넷 광고 기록관리 및 시장감독	소비자청의 조사 및 위반행위 시정명령	회원국 관할당국의 집행 및 온라인 플랫폼 감독

5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Consumer Protection Act, B.E. 2522, 1979 - Proposed Amendment - (on inserting e-commerce definitions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importers) Draft Act, September 2026
관리기관	Thai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Board
법적근거	「소비자보호법」
통보문서	-
주요목적	디지털 광고의 투명성 확보, 상품 라벨 관리체계 정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광고 수탁자 관리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및 제휴 마케팅 담당자 등 광고 수탁자 정의 신설
광고 공개 의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 관여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목적 및 사업자 관계 공개
협찬 관계 공개	고용관계, 금전적 보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상 제공 및 할인 제공 등 광고 활동 조건에 따른 공개 의무 적용
라벨 작성기한	태국 내 제조상품은 판매 전, 수입상품은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라벨 작성
전자적 표시	전자적 기호 및 디지털 코드 등 라벨 정의 확대
자료관리 및 조사	라벨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의 작성과 보존 기준 정비, 전자자료 제출 명령 권한 확대
위반 시 제재	광고 및 라벨 관련 처벌 상한 인상,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 벌금 적용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디지털 광고의 상업적 관계 공개 및 상품 표시정보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목적 인정
비차별성	광고 및 라벨 관련 요구사항에서 태국 국내외 사업자 간 명시적 차별 요소 미확인
최소무역제한성	별도 제품인증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신설하지 않으며, 수입상품의 라벨 작성기한을 통관 및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진행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직접 비용)** ①광고 목적 및 사업자 관계 공개를 위한 콘텐츠 수정, ②상품별 라벨 기재사항 확인 및 표시정보 변경, ③광고위원회 및 라벨위원회의 관련 고시 적용에 따른 추가 조치 비용 발생 가능
- **(간접 비용)** ①광고 수탁자의 고용관계 및 보상 조건 관리, ②광고 콘텐츠별 공개 의무 적용 여부 확인, ③수입상품의 라벨 작성기한 및 관련 자료관리, ④개정안 확정 및 시행일 모니터링 등에 따른 행정업무 발생 가능

○ 결론 및 권고사항

- **(결론)** 디지털 광고 수탁자의 광고 공개 의무 신설, 수입상품의 라벨 작성기한 변경 및 소비자보호 행정체계 정비
- **(권고사항)** 광고 수탁자 및 협찬 관계 확인, 광고 공개 의무 적용 여부 점검, 수입상품의 라벨 작성기한 및 표시요건 관리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 및 상품 표시 관련 개정안으로, 태국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차별 요소는 확인되지 않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광고 공개 및 라벨 작성요건 확인	① 태국 대상 인플루언서 및 제휴 마케팅 활용 여부 확인 ② 광고 수탁자의 보상 조건에 따른 광고 공개 의무 검토 ③ 태국 수입자와 라벨 작성기한 및 표시사항 확인
중견기업	광고 운영 및 상품 표시관리 강화	① 광고 수탁자별 고용관계 및 협찬 조건 구분 관리 ② 온라인 광고 콘텐츠의 광고 목적 및 사업자 관계 공개 여부 점검 ③ 수입상품의 통관 및 반출 완료일 기준 라벨 작성기한 관리
대기업	광고 및 상품 표시 관련 규제 준수체계 운영	① 태국 대상 광고 채널 및 광고 수탁자별 공개 의무 관리 ② 광고 제작 및 게시 과정에 협찬 관계 공개 기준 반영 ③ 태국 수출상품의 라벨 작성기한 및 표시정보 관리체계 운영 ④ 개정안 확정 및 관련 하위 고시 개정 동향 모니터링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참고자료

□ 참고자료

연번	국문	원문
1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2522
2	「라벨 관리대상 상품의 라벨 특성에 관한 라벨위원회 고시, 2022」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ว่าด้วยฉลาก เรื่อง ลักษณะของฉลากสินค้าที่ควบคุมฉลาก พ.ศ. 2565
3	「라벨 관리대상 상품의 라벨 특성에 관한 라벨위원회 고시(제3차 개정), 2022」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ว่าด้วยฉลาก เรื่อง ลักษณะของฉลากสินค้าที่ควบคุมฉลาก (ฉบับที่ 3) พ.ศ. 2565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법(제..호) 불기 ....년」 법률안에 첨부된 원칙 및 이유에 관한 설명서

원칙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비자", "사업자", "광고 매체" 및 "라벨"의 정의를 개정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의 정의를 추가한다. (제3조 개정)

(2)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개정한다. (제3조의1 추가)

(3)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한다. (제9조 개정)

(4)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한다. (제9조의1 및 제9조의2 추가)

(5)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정보 고지 또는 광고에 관한 지침 결정 권한을 폐지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 수행 기준을 추가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개정)

(6)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제10조의1,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추가)

(7)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 임명, 위원회 회의, 개인에 대한 문서 또는 정보 제출 명령, 회의수당 지급, 피고발자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을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개정, 제17조의1 추가)

(8)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의 권한과 직무를 개정한다. (제20조 제(6)의1호 추가)

(9)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제(5)호 개정)

(10)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제23조 개정)

(11) 광고에서의 문구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한다. (제26조의1 개정)

(12) 라벨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라벨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13) 라벨 관리대상 상품과 관련된 사업 운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제35조)

(14)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 수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한다. (제39조)

(15)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도록 개정한다.

(제39조의2)
(16) 협회 또는 재단의 인증 갱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제40조)
(17) 라벨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제43조)
(18) 처벌 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19) 광고 매체 소유자, 광고사업자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제50조)
(20)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개정한다. (제52조)
(21) 징역형 및 벌금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개정한다. (제52조의1)
(22) 사업자가 라벨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개정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이유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의 일부 규정은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 특히 온라인 사업, 디지털 플랫폼, 전자매체를 통한 마케팅의 성장과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방식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현재의 소비자보호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소셜미디어 영향력 있는 인물에 의한 상품 리뷰, 상품 라벨 작성 및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심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의 일부 법률 규정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
「소비자보호법(제..호) 불기 ....년」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법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태국 왕국 헌법 제26조와 제24조,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
이에 국왕께서는 의회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도록 재가하셨다.
제1조
이 법률은「소비자보호법(제..호) 불기 ....년」이라 한다.
제2조
이 법률은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3조의 "소비자", "사업자", "광고 매체" 및 "라벨"의 정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소비자"란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연인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제안받거나 권유받은 자를 말하며, 대가를 지급한 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의 상품을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업자"란 상품의 판매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자,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며, 광고사업자 및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를 포함한다.
"광고 매체"란 신문, 인쇄물,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전화, 광고판, 디지털 플랫폼, 소셜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 등 광고의 매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라벨"이란 상품에 관한 문구를 표시하는 그림, 도안, 종이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말하며, 상품에 관한 문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는 기호, 코드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는 상품이나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거나, 상품이나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삽입되거나 함께 포함된 것을 말하며, 해당 상품과 함께 사용하는 문서 또는 사용설명서, 해당 상품이나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되거나 표시된 표지를 포함한다.
제4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3조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란 자연인, 법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광고 매체를 통해 문구를 전달하거나 전파하여 소비자의 인식, 의견, 신념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광고 매체상 영향력 있는 자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전파하고 그 대가로 금전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자, 라이브 방송 진행자, 제휴 마케팅 수행자 및 가상 온라인 매체 운영자를 포함한다.
제5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5조 제1항에 제(3)의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의1 사업자가 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상품의 제조,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에 관한 컴퓨터 데이터 및 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컴퓨터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컴퓨터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문구, 명령, 명령어 집합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말하며,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데이터도 포함한다."
제6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9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실 사무차관, 농업협동조합부 사무차관, 교통부 사무차관, 디지털경제사회부 사무차관, 상무부 사무차관, 관광체육부 사무차관, 내무부 사무차관, 공중보건부 사무차관, 산업부 사무차관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는 전문가 8명 이내를 위원으로 한다. 전문가 위원에는 학계, 시민 부문 및 사업자 부문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대표가 각 부문별로 최소 2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총장은 위원 겸 간사가 되며,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2명 이내를 간사보로 임명한다."
제7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도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 권리보호·법률지원·강제집행 담당 검사, 도 행정사무 책임자, 도 지방행정 담당관, 도 공공사업·도시계획 담당관, 도 상무 담당관, 도 공중보건의사, 도 토지 담당관, 도청 사무소장 및 도지사가 개별 사안에 한하여 승인하는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 2명 이내를 위원으로 한다.
도 담롱탐센터 업무단장이 위원 겸 간사가 되며, 도지사는 해당 도 소속 공무원 중 2명 이내를 위원 겸 간사보로 임명한다."
제8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콕특별시장(방콕 행정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콕특별시 사무차관, 검찰총장실 대표, 중앙수사경찰본부 대표, 보건국장, 도시질서관리국장, 공공사업국장, 사회개발국장, 방콕특별시 사무차관실 법률·소송사무소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 대표, 식품의약품청 대표, 산업제품표준청 대표 및 방콕특별시장이 개별 사안에 한하여 승인하는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 2명 이내를 위원으로 한다.
방콕특별시장이 임명하는 국 부국장을 위원 겸 간사로 하며, 방콕특별시장은 방콕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2명 이내를 위원 겸 간사보로 임명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10조 제1항 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제4호) 불기 2562년(2019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3)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 수행 기준을 정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0조의1 국제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위원회는 제20조 제(6)의1호에 따른 국제 소비자보호 협력 업무 및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기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적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내각에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내각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국제적 소비자보호 수수료율과 징수 기준, 방법 및 조건을 정하는 고시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그 권한과 직무에 따라 조정을 실시한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체결된 합의 또는 화해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분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분쟁해결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요구한 당사자는 해당 분쟁해결 합의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법 불기 2562년(2019년)」을 준용한다."
제12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1)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이나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민원을 심의한다.
(2) 소비자와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한 소비자 권리 침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거나 화해시킨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제13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5조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위임하는 특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의 회의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 또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문서나 정보를 제출하도록 누구에게든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제14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17조의1 중 「소비자보호법(제4호) 불기 2562년(2019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7조의1 제15조에 따른 위원장, 위원,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 분야별 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은 내각이 정하는 회의수당 및 그 밖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15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18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8조 이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분야별 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고발을 받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합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 사항을 정하거나 명령을 발하는 경우,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분야별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나 명령의 이행을 위한 임시 조건 또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20조에 제(6)의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6)의1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22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5) 광고위원회가 관보에 고시하여 정하는 그 밖의 문구"

제18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2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23조 광고는 소비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된 광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2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6조의1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가 의견이나 정보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상품, 서비스, 상표 또는 사업자의 명칭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그러한 문구의 표시에 관여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문구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문구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신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인 사업자 간의 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문구를 표시하는 자의 고용주인 경우

(2) 사업자가 문구 표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문구 표시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무상으로 보내거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도록 초청하는 경우
(4) 광고위원회가 관보에 고시하여 정하는 그 밖의 경우"

제20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31조 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제2호) 불기 2541년(1998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라벨 관리대상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자는 판매 전에 라벨을 작성하여야 하며, 라벨 관리대상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상품이 세관 절차를 거쳐 수입 통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라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라벨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문구는 라벨위원회가 관보에 고시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3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35조 라벨 관리대상 상품과 관련된 사업 운영을 관리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라벨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장부, 문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보존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항에 따른 장부, 문서 및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존 방법은 라벨위원회가 관보에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39조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로부터 소송 수행 요청을 받고 해당 소송이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임명하거나, 법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소비자보호 담당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소비자보호 담당관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회가 법원에 통지하도록 사법행정처에 통보한 후에는 소비자보호 담당관이 위원회, 도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방콕특별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23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9조의2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는 제39조 및 제39조의1에 따라 소비자보호 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전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지식, 능력, 도덕성, 윤리성을 개발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원에서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수행에 관한 실무 경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소비자보호 담당관의 직위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로 한다. 해당 직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정할 때에는 직무의 부담과 업무의 질을 고려하고, 사법절차에 종사하는 다른 직무 수행자의 보수와도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24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4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협회 또는 재단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매회 4년으로 한다."
제25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4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43조 제27조, 제28조 제2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47조 중 「소비자보호법(제4호) 불기 2562년(2019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47조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상태, 품질, 수량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오인을 유발하기 위하여 허위 문구 또는 그러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27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비자보호법(제4호) 불기 2562년(2019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48조 누구든지 제2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구나 제2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발령된 고시에서 정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6조의1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49조 누구든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발령된 광고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28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5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50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행위가 광고 매체 소유자, 광고사업자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광고 수탁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해당 행위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9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52조 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제4호) 불기 2562년(2019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항에 따른 행위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30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에 제5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52조의1 라벨 관리대상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31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31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중 「소비자보호법(제4호) 불기 2562년(2019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53조 사업자가 제33조에 따라 발령된 라벨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54조 누구든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라벨의 제작을 수탁하거나, 해당 라벨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라벨을 상품에 부착하는 업무를 수탁한 경우, 행정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20만 바트 이하의 행정질서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사업자가 제35조에 따라 발령된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10만 바트 이하의 행정질서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22조 제2항 제(5)호,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발령된 모든 부령 중 이 법률 시행일 전날에 시행 중인 부령은 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33조

「소비자보호법 불기 2522년(1979년)」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발령된 라벨위원회의 모든 고시 중 「소비자보호법(제2호) 불기 2541년(1998년)」에 따라 개정되어 이 법률 시행일 전날에 시행 중인 고시는 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